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50 | 2024.08.26 (2024.08.19~08.25)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8.19~08.25)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년간 통상정책 성과 평가 및 향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상정책 방향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의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세계 GDP 90%까지 더 넓고 촘촘하게 확충하여 우리 기업의 경제운동장을 확대하고, 미·일·EU·중국 등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하여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공급망·기술보호 등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다자무역질서 복원과 신통상규범 정립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 통합평가위원회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중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19년 3월에 도입·운영되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왔고, 제2기 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유례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사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알뜰폰사들의 보안역량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를 이 법에도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과 관련된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약관분쟁 조정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다른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분쟁에도 도입하고, 감정·자문제도 및 간이분쟁조정절차를 새로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수배자들의 법령 준수 및 검토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규정들을 보다 주주친화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신장식의원·한창민의원 등 34인)」,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1인)」,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투자에 대하여도 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앱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마켓 이외의 다른 앱마켓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의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지원 근거 및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

한류산업발전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류산업진흥법안(박정하의원 등 12인)**」 ,

주얼리를 제3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한류 상품(K-JEWELRY)으로 도약시키고, 주얼리시장에서 음성적 거래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얼리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체계, 주얼리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

육아휴직의 기간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년 이내로 각각 확대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을 보장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2인)**」 ,

부동산 개발 단계에 적합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인 리츠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등이 제출 및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금주(8/26~8/31)에는 8/28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결산 및 법안을 상정(8/26)하고 법안심사소위·예결산소위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8/2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상정 및 업무보고(8/26) 및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8/28),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김문수) 인사청문회(8/26)가 개최되며, <기재위>, <교육위>, <외통위>, <국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복지위>, <정보위> 등에서는 결산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굳건한 경제안보 국익극대화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산업통상자원부) 8
- 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비리, 발 못 붙인다(국토교통부) 10
-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입법 신속 추진(국토교통부) 12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13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13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13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부) 14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4
-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14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환경부) 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16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16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7
-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17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0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3인) 2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2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24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0인)	25
•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신장식의원·한창민의원 등 34인)	2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9
•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3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3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1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3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3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김영환의원 등 18인)	3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35
•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35
•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36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37
• 한류산업진흥법안(박정하의원 등 12인)	38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39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3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40
•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4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8인)	41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4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42
• 산업기술의 유출발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6인)	43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4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2인)	4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4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4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46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46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47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4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8.19~08.25) [바로가기](#)

- **[금융]** 금융사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 **[건설/부동산]**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전체회의(총회) 개최를 저지한 사례
- **[에너지·자원]**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
- **[국제상사중재]** 영국 중재법 약식판정 도입 예정 - 중재합의 및 전략 수립시 고려 필요
- **[환경]**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 2024.8월부터 바뀌는 기업결합 관련 제도 총정리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굳건한 경제안보 국익극대화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85→90% (세계 1위) 확대 - ‘넥스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사우스’ 무역금융·인증·마케팅 지원 강화 - 미(美) 대선 등 주요국 통상 리스크 민관 원팀 대응 체계 구축 - ‘공급망 협력협정’ 체결, 투자심사/핵심기술 보호 등 경제안보 강화	2024-08-22
---------	--	------------

정부는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년간 통상정책 성과 평가 및 향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상정책 방향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다자 통상체제가 현저히 약화되고, 주요국이 경제안보를 명목으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융합하여 자국 우선주의 조치를 지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퍼 선거의 해’를 맞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등 글로벌 국제통상질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우리의 통상정책을 체계적이고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그간 산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로드맵을 수립

주요 내용으로는

① 우리 기업의 경제운동장 확대

- 우리의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세계 GDP 90%까지 더 넓고 촘촘하게 확충
-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우선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후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
-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탄자니아·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 추진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
- 이미 협상이 타결된 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한 발효를 추진
- 우리의 주력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다층적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로 더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망을 구축
- 한일중 FTA 협상 재개, 말련·태국 양자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는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
-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 역대 최초로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플랫폼을 활용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
- ‘27년까지 무역금융((‘23) 76→(‘27) 90조), 해외인증 신속취득((‘23) 186→(‘27) 230품목), 중점 무역관((‘23) 92→(‘27) 113개) 지원을 확대하고 카자흐·우즈베크 등 주요 자원보유국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
- ‘K-산업 연계형 ODA’(산업인력·공급망·기술·그린)를 추진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상호호혜적 협력 기반을 구축

② 주요국 통상리스크 대비 철저

- 미·일·EU·중국 등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하여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 미국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한편, 美 대선에 대비하여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미(對美) 아웃리치를 전개
- 일본과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다자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아젠다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일(韓日)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급망 교란·위기 발생시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 연계 협력도 지속 추진
-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하여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하는 한편, 네덜란드·폴란드·체코 등 개별국과도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 원전·방산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 협력성과 도출을 추진하고, 아울러 EU의 동시다발적 경제입법에 대한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적극적 활용기회 발굴도 지원
-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한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공동위, 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 주력하며 특히, 한-중 양국 투자기업들의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을 추진

③ 공급망·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강화

- 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과 병행하여 '27년까지 호주·인니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SCPA: 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하여 공급망 교란에 신속하게 공조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
- 특히, IPEF 공급망 협정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초대 의장국으로서 인태지역 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의 조기 확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방침
- 최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발전과 글로벌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수적 자원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추진
-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4개국과 EU가 참여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Critical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를 주도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관련 사업기회 확대도 적극 추진
- 국내 첨단기술 확보 및 공급망 확충을 목표로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핵심업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추진
- 우리 핵심기술과 역량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엄단하고,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 심사대상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국내기업에 대한 M&A를 추가하고, 행정청의 직권심사 제도로 도입하는 등 외투심사를 강화
- 국제추세에 발맞추어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무역·투자·기술 안보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유사한 한국형 산업안보 전담조직 강화도 검토

④ 다자무역질서 복원과 신통상규범 정립 기여

-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서 WTO 분쟁해결 기능 정상화와 주요 분야 규범 협상 성과 도출을 위한 WTO 개혁 논의에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고,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 '25년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아태지역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과 도출을 추진
- 연내 '민관합동 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 등 우리 산업구조에 적합한 기후·환경 분야 통상규범 확산에 노력하고, 글로벌 디지털 통상네트워크 확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 분야에 대한 '범부처 AI 통상 대응체제' 구축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국토교통부

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비리, 발 못 붙인다!

- 심의결과 영구 공개 등 종합심사낙찰제 대대적 개편
- 316명의 심의위원 선정, 청렴교육 거쳐 최종 위촉
- 제2기 중심제 위원은 40대 대폭 증가(1기 16% → 2기 39%)

2024-08-21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 통합평가위원회('24.9.~'26.8.)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하였음. 중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19년 3월에 도입·운영되어 왔음

* 정량평가 : 기술인 등급·경력, 기술개발실적 등 / 정성평가 : 사업수행 계획·전문가 역량 등

국토교통부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음. 특히, 최근 중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언론 보도되었으며, 업계에서도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지적된 점을 감안, 제2기 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유례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하였음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위원회 구성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철저한 검증을 거쳐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 엄선

- 국토교통부는 제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총 4단계의 검증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음
- 제1기 위원회와는 달리, 자천(自薦)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음. 각 기관에서 추천한 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요건(경력, 학위, 기술사 자격증 등)을 확인
-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을 제외하였음
- 3차 검증은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중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심층 검토
- 4차 검증에서는 기관별로 그간 각종 심의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시행
- 이와 같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모에서 추천된 총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약 24%)을 선정

(2) 제2기 중심제 위원, 40대 대폭 증가

- 제1기에서는 50대가 74.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제2기에서는 40대 비중이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제2기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앞으로 보다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제1기에서는 50대가 74.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제2기에서는 40대 비중이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제2기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앞으로 보다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선(先) 교육 후(後) 위촉

- 국토교통부는 이들 31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
* 청렴교육 일정 : 8.20(김천, 한국도로공사), 8.21(전주, LH), 8.22(세종, 국토교통부), 8.30(서울, 민간위원)
- 또한, 중심제 위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강화. 앞으로 발주기관은 중심제 심의 직전에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추가 청렴교육을 시행(사례위주 교육, 심의위원 청렴진단 체크 등)하여야 함

(4) 중심제 심의 운영방식 및 제도 개선

- ① **(평가지표)** 주관성이 높은 현행 중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 사업자 선정 목적이 상이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들의 정량화를 추진. 평가지표는 연구용역 및 검증을 거쳐 내년 심사 시부터 적용 가능토록 연내 개정할 계획
- ② **(심의 과정 개선)**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
 -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통질문 전문화, 기술인 심층 면접을 강화
 - 업체의 발표자료 작성 및 과다한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을 추진
- ③ **(심의결과 공개 및 사후평가)** 위원별 채점표,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를 온라인 툰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
 - 발주청, 참여업체,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특이 동향을 확인하고, 심의 이력을 Big Data를 구축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
- ④ **(심의위원 균형)**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함
 - 온라인 툰키마당에 중심제 기능을 추가하여 각 발주청이 심의위원 선정 시 온라인 툰키마당을 공동 활용
- ⑤ **(해촉·처벌규정 보완)** 중심제 심의위원도 중심위 위원(툰키 심의)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강화
 - 입찰 담합, 로비 등 불공정 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심의 당일에 선정되는 위원 명단 비공개 및 심의 시 준법감시원 배치 등 비리행위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입법 신속 추진

-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현장에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9월 중 법률 제·개정(안) 발의 추진

2024-08-23

정부는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일)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 입법계획을 점검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PF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도 개정**할 계획임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심전세업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임

아울러, 非아파트 시장 기반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9월 중으로 조속히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호, 올해 5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임

또한,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은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별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세부 추진과제 중 각 기관의 내규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8월 중으로 완료하여 실행하기로 하였음

한편,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 차단 등 주택수요 측면의 관리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특히, 9.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해 나갈 것임

*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1.2%p로 상향 적용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8-28 시행 예정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63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처분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8-21 시행
---------	--------------------------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중소기업 간주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344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 및 법률 제20362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된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처분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8-21 시행
-------	--	---------------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0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 수련전문과목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및 그 밖에 보건의료 여건 및 수련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으로 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8-20 시행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해당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20350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 등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1년간 게재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금 적립 현황, 적립금의 법인에 대한 투자 현황 등에 대하여 매년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까지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8-20 시행

해당 지역의 특성이 적정하게 반영된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2024-08-20 시행

택시업종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바, 해당 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게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00호, 2019. 8. 20. 공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은 공포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의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서의 시행일을 2024년 8월 20일로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08-21 시행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감축 이행의무자의 지정,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 이행의 보고 및 그 검증을 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의 지정 등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36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감축 이행의무자의 배출량보고서 및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과 보완 절차를 정하고, 인력·시설기준 등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상쇄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제4조)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3명 이상 갖추고, 검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며,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②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제6조 및 별표 2)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의 배출량검증보고서의 검증 오류가 허용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하도록 하는 등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③ 배출량보고서의 작성 및 검증(제8조)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감축 이행의무자는 전년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사용된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을 기반으로 산정하여 배출량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은 배출량 보고서에 운항정보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행의무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은 배출량보고서의 검증기준,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최종 검증의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④ 상쇄의무의 이행 면제 (제9조)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 · 감축 이행의무자 중 직전 이행기간 동안 통보받은 총 상쇄의무량이 3천톤 미만인 경우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첫해를 포함하여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국제운항을 시작한 이후의 총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2019년 세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1천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⑤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 및 검증 (제10조)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 · 감축 이행의무자는 상쇄의무를 이행한 내용을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은 해당 보고서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서 삭제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총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은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검증기준,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최종 검증의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8-21 시행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 등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324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예금계좌를 요양급여 또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을 받은 사람 등이 지정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용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보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2024-08-20 시행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후 2년 이상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실·국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 등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사혁신처장이 기관의 설치 시기 및 인적 구성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이 그 필수보직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8-20 시행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범위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하던 것을 **해당 기산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확대하고**, 감정평가사시험 합격자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과 실무수습신청기간 및 실무수습기간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개정령

2024-08-23 시행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전선로 및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 관련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용도폐지된 군사시설을 박물관·교육원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 공장·주택을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 등의 총 수와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환경정비구역에서 주택을 증축하면서 증축하는 부분을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8.19. ~09.30.

스마트폰은 국민들의 의사소통, 정보전달, 금전적인 거래 등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어 가입단계부터 안전하게 개통·활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 취약으로 인해 스마트폰이 타인 명의로 불법 개통되고,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 이에 알뜰폰사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알뜰폰사들의 보안역량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알뜰폰사업자들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에 포함 (제36조의7제2항의 하단 신설)
 -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제외 대상자 중에서 알뜰폰사업자를 제외함으로써 신고 의무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
- ②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 명확화 (제49조제1항제1호)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현행 법령상의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여 다른 대상자들도 포함하여 해석될 수 있는 바, 현재 적용대상자들로만 한정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설치·보유한 자로 한정하여 정의
- ③ 알뜰폰사업자들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알뜰폰사업자들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전화: 044-202-6463, 팩스: 044-202-60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4.08.20. ~09.30.
-----------	---------------------------------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84호, 2023. 10. 31. 제정·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양자종합계획 및 양자시행계획, 기술지도, 상용화 전담기관 등과 관련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2 14조 등)
- ② 양자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 7조)

- ③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보안위협요소 관련 검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④ 양자팍,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 ⑤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성과점검 및 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21 23조)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산업과 \(전화: 044-202-6871\)](tel:044-202-68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8.14.
~08.26.

스마트폰은 국민들의 의사소통, 정보전달, 금전적인 거래 등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어 가입단계부터 안전하게 개통·활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 취약으로 인해 스마트폰이 타인 명의로 불법 개통되고,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

이에 알뜰폰사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알뜰폰사들의 보안역량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알뜰폰사업자들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에 포함 (제36조의7제2항의 하단 신설)
 -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제외 대상자 중에서 알뜰폰사업자를 제외함으로써 신고 의무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
- ②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 명확화 (제49조제1항제1호)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현행 법령상의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여 다른 대상자들도 포함하여 해석될 수 있는 바, 현재 적용대상자들로만 한정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설치·보유한 자로 한정하여 정의
- ③ 알뜰폰사업자들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알뜰폰사업자들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전화: 044-202-6871, 팩스 : 044-202-6037\)](tel:044-202-68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8.22.
~10. 4.

「방송법」일부개정(법률 제18732호)에 따라 유선방송국 설비에 대한 준공검사 의무 조항이 삭제되어 동일한 사항을 검사하는 재허가 검사 관련 조항을 폐지하여 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유선방송국 설비에 대한 재허가 검사 제도 폐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선방송국 재허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재허가 검사 수행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삭제 (현행 제16조제5항 일부 삭제)
- ② 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검사 폐지 추진에 따라 재허가 검사 권한 위임 및 위탁 관련 조항 삭제 (현행 제68조제1항1의2호 및 제3항제1호 삭제)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전화: 044-202-6543, 팩스 : 044-202-6039)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8.19.
~09.30.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일부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범위 및 준수사항 (안 제7조의2)**
 - 순환이용 촉진 대상이 되는 제품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정하고 준수사항으로 순환원료와 친환경소재의 종류, 양, 사용가능성 등 조사하여 순환원료와 친환경소재의 사용 확대 등을 정함
- ②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범위 및 준수사항 (안 제10조의2)**
 -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이 되는 유통사업자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유통산업과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정하고 준수사항으로 1회용품 유통포장재는 포장공간 및 횡수를 최대한 줄이는 등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 유통포장재사용을 확대 등을 정함
- ③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상 범위 및 준수기준 (안 제10조의3)**
 -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수리 기준의 준수 대상이 되는 제품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으로 정하고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예비부품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하는 부품보유기간 이상 보유, 예비부품을 제공하는 경우 배송기일을 알리고 배송기일 내 배송 등을 정함

※ 문의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화: 044-201-7347, 팩스: 044-201-7351)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8.20.
~09.30.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이용계획의 변경·종료신고 및 자자체장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미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를 위해 그 활용용도를 공업용수와 농·어업용수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유출지하수 활용용도의 확대 (안 제14조의2)

- 생활용수로 한정되어 있는 유출지하수 활용 용도를 공업 및 농·어업용수로 확대함으로써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기대

② 유출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제44조, 안 별표 7)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종료신고 및 자료제출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문의처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전화: 044-201-7183, 팩스: 044-201-7189\)](tel:044-201-718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3인)	2024-08-21 발의
---------	-------------------------	---------------

현행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됨

그런데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보험금청구권자가 바로 알기 힘든 경우도 존재하며, 보험금청구권자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자가 지급 여부에 대한 유보적 회신을 지속하다가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자 등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권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을 날부터 3년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보험금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며,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보험자의 회신이 도달한 날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651조, 제662조 및 제731조제3항)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2024-08-19 발의
-------	--	---------------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통신중개업자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의 피해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극심한 손해가 예상되며, 두 기업의 회생 신청으로 영세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사업자는 판매한 재화등의 대금을 정산받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40일 이내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비하여 영세 소상공인 등과 소비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의 정산 주기를 소비자가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할 날부터 20일 이내로 설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는 한편, 재화등의 대금을 보호하는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2024-08-19 발의

현행법에서는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입공매도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차입공매도 조건에 관해서는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상환기간과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의 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함)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대주거래가 필수적임.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이 대차·대주거래를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차입내역도 수기로 입력하고 있음

이렇게 시스템 없이 운용되고 있는 거래 상황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효율성 확보라는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게 하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개인투자자가 기관·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18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4-08-20 발의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합병시점을 지배주주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고평가되고,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삼성물산의 주가는 저평가된 시기에 합병을 결정함으

로써,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결정된 반면 저평가된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이뿐만 아니라 최근 소형장비 분야에서 매년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기업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지빌리티에서 인적분할 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 재편이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방안이고,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두산밥캣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서 상장회사의 합병에서는 예외 없이 기업가치를 시가로 정하도록 강제한 자본시장법을 악용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음

이에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65조의4 등)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024-08-20 발의

최근 이커머스(E-Commerce)에서 정산이 지연되어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태가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로 지급되는 거래대금의 정산 주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거래대금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거래대금 지급이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는 지급되도록 하는 등 거래대금 지급의무를 명문화하고, 에스스로 업체가 거래대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2024-08-20 발의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로 하여금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 이후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고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제재의 적시성이 낮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하여 불법 이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178조의4부터 제178조의7까지 신설)

정무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0인)

2024-08-20 발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공정거래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의 티몬, 위메프 사태에서 보듯 판매대금 정산주기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입점 판매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와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의 목적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에 이바지하도록 함 (안 제1조)
-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중개거래계약 해지 시 사전통지, 중개거래에 관한 서류 보관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③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재화 등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결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며, 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회사를 통해 관리하도록 함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④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의 범위 내에서 중개수수료율을 정하며, 이용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한 경우 응할 의무를 부여함 (안 제14조 및 제15조)
- 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0조원 이상인 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고,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 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안 제16조)

- ⑥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조사 결과 신고대상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안 제17조)
- ⑦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함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 ⑧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조건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안 제26조)
- ⑨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마다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27조)
- ⑩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목적의 시장조사 및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실태파악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목적의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⑪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안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 ⑫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 확산이 우려되어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
- ⑬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
- 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안 제41조)
- ⑮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문기구인 온라인플랫폼 부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할 때 또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때,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플랫폼 부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안 제42조)

정무위원회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신장식의원·한창민의원 등 34인)

2024-08-20 발의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여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기업집단이나 지배주주를 위해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가 경영임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ing)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1/3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독립이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출을 3명으로까지 확대하고,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참여와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고 주주제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을 제한하고 적절한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을 강화하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이를 소각하도록 하는 등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함

다만,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시급하게 수시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비상장회사나 중소기업 등 폐쇄적 구조의 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법과 구분하여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배구조 개선을 집중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ESG 이슈와 관련하여 다양해지는 주주들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의 법령 준수 및 검토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아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규정들을 보다 주주친화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회사의 외부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사외이사” 용어를 본법에서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함 (안 제2조제7호)
- ② 주주명부에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도록 하고, 주주명부 확보의 편의를 위해 주주가 회사뿐 아니라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기입되는 정보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 (안 제6조 및 제40조)
- ③ 자기주식이 지배권 승계, 지배력 확보 등에 편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주식의 취득은 소각과 주식보상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을 허용하고, 특정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차기 총회에서 소각하도록 함 (안 제9조)
- ④ 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에 한하여 발행을 허용하고,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과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종류주식의 발행은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종류주식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함 (안 제10조)

- ⑤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연장하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함. 나아가 소집공고에 포함되는 임원 선임, 임원 보수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설명을 강화함으로써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도모함 (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
- ⑥ 현장주주총회 병행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 및 제17조)
- ⑦ 주요 상장회사(대형상장회사 및 이중상장회사 등)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소주주주들의 이사 선임권을 보장함 (안 제19조)
- ⑧ 임원 선임과 해임 및 정관 변경 안건의 경우 의안을 분리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안건별로 주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 ⑨ 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회사의 보수정책 및 각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세이온페이” 제도를 도입함(안 제21조)
- ⑩ 상장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배출량, 장기·중기·단기의 감축 목표 및 감축 전략 등을 수립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세이온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함 (안 제22조)
- ⑪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을 보호하도록 함 (안 제23조)
- ⑫ 임원 및 독립이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갖춘 임원 및 독립이사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 및 제25조)
- ⑬ 이사회 및 하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이사의 수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이사회 총원의 상한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이사 총수의 3분의1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함. 또한, 주요상장회사에 강화된 지배구조 규율을 적용함 (안 제26조 등)
- ⑭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해임 시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함. 나아가 특정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최대주주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해임 시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해임에 관한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경우에도 해당 안건의 총회결의 시 그의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함 (안 제28조 및 제30조)
- ⑮ 주요상장회사에 이사회내 위원회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임원 등의 성과평가, 보수 규정의 심의·의결, 보수의 결정, 환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함 (안 제31조)
- ⑯ 상장회사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책임감면에 관한 「상법」 제400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함 (안 제33조)
- ⑰ 재무제표의 승인에 관한 주주제안이 제기된 경우 재무제표의 승인 및 이익배당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함으로써, 주주들이 회사의 배당정책에 대해 관여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4조 및 제36조)
- ⑱ ESG 이슈에 관하여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를 도입함 (안 제42조제2항)
- ⑲ 「상법」상의 각종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완화함으로써 소수주주권을 강화함 (안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 ⑳ 「상법」상 회계장부열람권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 회사의 내부 규정 등을 포함하는 “경영정보열람 및 등사권”으로 확대함 (안 제44조)
- ㉑ 상장회사가 30% 초과 보유 중인 자회사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이종대표소송을 허용하고, 소 제기 요건을 대표소송 수준으로 완화함 (안 제46조)
- ㉒ 주주평등대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함 (안 제48조)
- ㉓ 계열사 간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영업 양·수도, 자산 양·수도, 분할합병, 분할,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총회 결의 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 행사를 3% 이내로 제한함. 또한 해당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안 제49조부터 제51조)
- ㉔ 회사분할 시 자기주식의 의결권 부활을 막기 위해,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로의 자기주식 승계를 금지하고, 분할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의 신주발행을 금지함 (안 제52조)
- ㉕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등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하고 총회 결의 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 행사를 3%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지 않도록 함 (안 제53조)
- ㉖ 주주들에게 회사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주주총회 2주 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상장회사에게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며, 주주총회의 결과 및 대표소송의 제기 사실 등을 공시하도록 함 (안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8-20 제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를 이 법에도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율되고 있어 분쟁조정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거나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과 관련된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약관분쟁 조정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다른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분쟁에도 도입하고, 감정·자문제도 및 간이분쟁조정절차를 새로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 강화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② 공정거래관련분쟁 조정위원회 제도 정비 (안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 공정거래 관련 분쟁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분쟁 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분쟁’ 조정위원회에도 다른 조정위원회와 같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③ 공정거래관련분쟁 조정제도 정비 (안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

- ‘하도급거래분쟁’ 및 ‘약관분쟁’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다른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에서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를 조정대상에 포함함
- 사업자가 조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관분쟁’ 조정에서도 다른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에서와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약관분쟁’의 분쟁당사자 간 합의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다른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에서와 같이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사항이 이행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약관분쟁’의 경우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약관분쟁을 제외한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경우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에 대해서만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의 신청 및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조정 간 형평을 도모함
-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분쟁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등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이 조정하는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하여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함
- 공정거래관련분쟁 조정의 성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 중에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④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 약관분쟁 조정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불공정거래분쟁, 가맹사업거래분쟁,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 대리점거래분쟁 및 하도급거래분쟁 조정에도 도입함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2024-08-22 발의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및 저신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는 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보다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9조의4 등)
- ②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함 (안 제11조)
- ③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한 신고와 관계자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12조의2 신설)
- ④ 불법사금융업자등의 벌칙을 강화하여 등록의무 및 광고 금지 의무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방해나 출석·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9조, 제21조 등)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2024-08-22 제출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2009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커진 경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공시대상기업집단 수의 변화를 보면 2009년 48개에서 2022년 76개로 늘어 고정된 지정기준으로 인하여 대기업 규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견기업이 대기업 진입을 미루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평가임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여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1항 전단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1인)

2024-08-20 발의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의 재정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2024-08-20 발의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연구개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장비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생산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고사양 고가의 장비 도입이 필요하나 첨단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구입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내국인의 국가전략기술 등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중고품 투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8인치 생산시설 투자 기업의 경우 신규장비 수급문제로 중고장비 구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고장비 투자 비용 또한 신규장비 가격의 약 80% 수준이나, 해당 기업의 중고장비 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특성상 장비가 고가이고 수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중고품을 쓰는 경우가 많음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투자에 대하여도 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2024-08-21 발의

대한민국 게임산업 수출액은 연간 약 12조원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도 4위를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수출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했음. 이러한 게임산업을 뒷받침하는 이스포츠는 이스포츠월드컵 등 전 세계적인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고,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도입 후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2025년부터 이스포츠올림픽 개최를 결정하는 등 위상이 높아졌음

이에 미국, 중국, 사우디 등 주요국들은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는 민간부문에서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 및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국가적 지원이 부족해 연이은 이스포츠 구단 해체, 열악한 선수 처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서 대회 개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 구단, 선수단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내국법인이 만든 게임 종목의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이스포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34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2024-08-21 발의

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50 탄소 중립” 달성 등 탄소배출과 관련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 환경 부담금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됨.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일괄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여 순환자원 유통업체에 불필요한 과세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하여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의3제4항)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김영환의원 등 18인)

2024-08-22 발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경우 재산을 평가할 때에 가액의 20%를 일괄하여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이렇듯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현행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 할증평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할증평가비율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할증평가 비율을 재산정하여 최대 2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 등이 할증평가비율 또는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 국세청장에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6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2024-08-21 발의

현행법은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앱 마켓시장에서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두 기업이 가진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직접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5인)

2024-08-20 발의

최근 창의성·전문성이 내재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는 2022년을 기준으로 매출액 4.1조원, 종사자 3.5만명으로 크게 성장했고, 다른 사업에 비해 청년 비중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국내 크리에이터 사업체는 대부분 10인 미만으로 영세하고 크리에이터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계약 시 불공정 계약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의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우수인력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③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에 관한 사업화, 해외시장진출 지원 및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금융 지원, 작업환경의 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④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⑤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에 관한 근거와 서비스제공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⑥ 크리에이터와 계약 당사자 간 공정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근거 및 전담기관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2024-08-22 발의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은 여러 부처 및 사업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지원 근거 및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안 제5조)
- ③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인공지능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예산의 배분,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안 제6조 및 제7조)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국내·외 동향 및 관련 제도의 조사,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11조 및 제12조)

-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수집·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안 제13조)
- ⑩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 지원 시책 시행 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를 우선 고려하고 중소기업자의 참여 활성화 등 관련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안 제15조)
-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19조)
- ⑫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공표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하여야 함 (안 제22조)
-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안 제23조)
- 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안 제25조 및 제26조)
- ⑮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며, 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음 (안 제27조)
- ⑯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운용 사실 고지 및 표시를 하도록 함 (안 제28조)
- ⑰ 해외사업자의 인공지능 기본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확인 신청,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함 (안 제29조)
- ⑱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 기관 등은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30조)

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2024-08-20 발의

현행법에는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사고 등 리튬배터리의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리튬배터리를 생산·저장·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급함. 또한, 현재 리튬이온전지 화재 등은 기존의 진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실정임

이에 리튬배터리를 생산·저장·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소방청장의 안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 (안 제40조)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한류산업진흥법안(박정하의원 등 12인)

2024-08-19 발의

한류는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현재는 ‘유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17 ~'21년) 화장품·음악·방송 등 한류 품목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한류의 경제적 효과가 생산유발액 기준 총 37조원에 달했고 이 중 30.5조원은 소비재 수출 증진, 6.5조원은 문화콘텐츠 수출 증진을 통해 발생하였다고 함

한류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해서 지난 5년간('17 ~'21년) 한류 확산에 따른 총 취업유발인원은 16만명으로, 이 중 11.6만명은 소비재 수출 증가로, 4.4만명은 문화콘텐츠 수출 증가로 유발되었음. 또한, 전체 취업유발인원 16만명은 2022년 국내 취업자 수 증가 폭(81.6만명, 통계청)의 5분의 1(19.6%)에 해당하는 수치임

이에 한류산업발전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의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이라고 정의함 (안 제2조제2호)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류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안 제6조 및 제7조)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안 제8조)
- ⑤ 정부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류진흥위원회를 둠 (안 제9조)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 등이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안 제11조)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12조)

-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13조)
-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공공기관을 한류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안 제15조)
-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안 제17조)

문화체육관광
위원회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4인)

2024-08-13 발의

현행법은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애니메이션은 만화·캐릭터·영화·3D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이 가능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우수한 제작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러한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OTT 시장의 발달로 한국애니메이션 육성에 있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두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2항, 제5조, 제11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및 제2조제8호, 제12조제2항제1호의2·제1호의3, 제13조의2, 제17조의3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2024-08-23 발의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함)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보조항로 운영에 따른 결손금액을 전액 보전함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는 재투자를 통한 서비스 품질 등을 개선하려는 유인이 저조하고 친환경·스마트 기술의 개발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므로, 국가가 직접 보조항로를 운영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부는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조항로가 아닌 일반항로 중에서 일일생활권 구축에 기여하는 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와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거가 부재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그간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었던 보조항로 운영기관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해상교통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조항로의 운영기관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만 선정하던 것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선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도록 함 (안 제15조제1항)
- ② 보조항로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 면허를 받아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제6항제4호 신설)
- ③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의3 신설)
- ④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상교통 공백의 방지를 위하여 여객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보조항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에도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제1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2024-08-19 발의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됨

그러나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납품대금연동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운송비 등 경비는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산업용 전기료는 22년 한해 38.9%가 급등하였음에도,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는 최근 5년 동안 48.3%가 올랐으나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등 10인)

2024-08-19 발의

주얼리를 제3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한류 상품(K-JEWELRY)으로 도약시키고, 주얼리시장에서 음성적 거래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얼리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 시행 체계, 주얼리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 · 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The FATF Recommendations)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에 주얼리소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주얼리 거래를 투명화하려는 것임

더불어 주얼리유통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얼리소매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8인)

2024-08-19 발의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무역장벽이 현실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에너지사용량 중 83.9%가 산업단지에서 사용되고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8.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지난 7월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내 태양광 에너지의 개발·이용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히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옥상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 에너지의 보급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 33조제7항제5호의2 및 제45조의2제4항제8호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2024-08-20 발의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용수·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현행법상 지원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국·중국·대만 등 주요국 대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3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2024-08-21 발의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기후 위기시대에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와 공공기관등에게 더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행하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12조 및 제29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6인)

2024-08-21 발의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해외 기술유출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최대 1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벌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고되는 처벌수위는 낮은 편이며,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가 국민경제 발전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고려했을 때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해외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산업기술의 취득·사용·공개행위에 따른 재산상 이득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취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산업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2024-08-20 발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불법 행위자, 배출 또는 수집·운반 등에 관여한 자, 불법 행위를 요구·의뢰·교사한 자나 그 행위에 협력한 자, 토지 소유자 등에 부여하고 있는데, 불법 행위자가 부정한 의도를 갖고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무단 투기 및 방치한 후 도주함으로써 해당 토지 사용을 허용한 토지 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불법 행위자, 배출 또는 수집·운반 등에 관여한 자, 불법 행위를 요구·의뢰

· 교사한 자나 그 행위에 협력한 자, 토지 소유자 등에 부여하고 있는데, 불법 행위자가 부정한 의도를 갖고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무단 투기 및 방치한 후 도주함으로써 해당 토지 사용을 허용한 토지 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부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토지의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더 확대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토지 소유자의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책임을 경감해 주거나 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처리비용을 감경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조치명령 우선순위제를 도입하고,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제2항 및 제3항 등)**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2인)

2024-08-20 발의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이 부모의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기간에 비하여 너무 짧아 현실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년 이내로 각각 확대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을 보장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4항).**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024-08-23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출생휴가 사용 이후에는 11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 출산 직후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자녀 출생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2024-08-19 발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도 원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현물보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같이 주민들이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시공사 추천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제5호 신설)
- ②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들이 시공사를 추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의4제4항)
- ③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을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의7)
- ④ 토지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 보상 대상자를 '21. 6. 29.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 하며, 무주택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의10)
- ⑤ 도심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의14제1항제4호 신설)
- ⑥ 제40조의10에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의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준용규정에서 삭제함 (안 제40조의17)
- ⑦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개정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고, '21. 6. 30. 이전에 토지등의 취득으로 토지 등소유자가 된 자 등에게만 적용하는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 및 제4조 삭제)

- ⑧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승인,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한 개정규정과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현물보상에 관한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토지보상에 관한 적용례는 삭제함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 및 제4조, 제8조 삭제)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2024-08-19 발의

현행법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하려는 발주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에 대한 평가·공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의 경우 평가·공시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발주자가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고 적절한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시공능력 평가제도와 달리 평가의 활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평가·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6조제3항 등)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024-08-19 발의

우리나라는 대형 오피스 등 부동산 개발·임대 분야에서 연간 190조 원 이상('22년 기준)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많은 투자자금이 소요되어 국민들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움

국민도 대형·우량 부동산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주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를 지난 2001년 도입한 결과, 개인 투자자가 40만 명을 넘어섰고, 리츠 자산규모도 98조 원 규모로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비슷한 시기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작고 투자 대상도 제한된 편임

따라서, 리츠 산업이 장기적이고 견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AI, 초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 대상을 시의 적절하게 편입하고 개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리츠 산업이 성장하고 투자자가 증가 할수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그간 고질적으로 반복된 PF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PF 사업의 ‘저자본-고부채’ 구조를 벗어나야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리츠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더라도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 함

이에, 부동산 개발 단계에 적합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인 리츠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 신설 (안 제26조의4 신설 등)

- 영업인가 또는 등록 없이 신고만으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현물출자와 부동산 개발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 위험이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단계에서 공모를 제한하고, 공모 의무 기한도 영업인가일부터 최대 5년으로 연장함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운영 단계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영업인가나 등록을 받아 공모하도록 함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점검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투자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함
- 그 밖에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도입에 따른 설립신고의 취소, 해산, 청문, 벌칙 등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함

② 부동산투자회사지원센터 설립 (안 제49조의8 신설)

- 부동산투자회사의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부동산투자시장의 전반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각종 인가, 감독, 검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뿐만 아니라, 연구, 평가, 분석 및 자문 등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2024-08-20 발의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어야 함

그런데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할 뿐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택배사업자가 영업점을 대상으로 위탁구역을 회수하는 것이 용이해져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일을 잃게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현행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제11조에서 규율하는 계약해지 시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우회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2조, 제39조제3호의3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2024-08-23 발의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고 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어 항공교통이용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들을 포함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61조제1항)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시	내용
8/28(수)	- 안건 처리

2. 상임(특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운영위	전체회의	8/27(화) 10:00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등
법사위	예결산소위	8/26(월) 10:00	- 결산 심사
	법안심사1소위	8/27(화) 10:00	- 고유법 심사
	전체회의	8/27(화) 14:00	- 결산 및 법안 등 의결
정무위	전체회의	8/26(월) 10:00	- 결산 및 법안 상정
		8/28(수) 13:30	- 결산 및 법안 의결
	법안심사2소위	8/27(화) 10:00	- 법안 심사
	예결산소위	8/27(화) 14:00	- 결산 심사
	법안심사1소위	8/27(화) 10:00	- 법안 심사
기재위	전체회의	8/27(화) 10:00	- 결산 상정 등
교육위	전체회의	8/26(월) 10:00	- 결산 및 법안 상정
	예결산소위	8/27(화) 10:00	- 결산 심사
	법안소위	8/28(수) 10:00	- 법안 심사
과방위	전체회의	8/26(월) 10:00	- 법안 상정, 업무보고
		8/27(화) 10:00	- 결산 상정
		8/28(수) 10:00	-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

외통위	예결산소위	8/28(수) 09:00	- 결산 심사
	전체회의	8/29(목) 10:00	- 결산 및 법안 의결
국방위	전체회의	8/27(화) 10:00	- 인사청문요청안 등, 결산, 법안 상정
문체위	전체회의	8/26(월) 10:00	- 법안, 결산, 청원 상정
	문화예술법안소위	8/27(화) 14:00	- 법안 심사
	체육관광법안소위	8/28(수) 10:00	- 법안 심사
농해수위	전체회의	8/26(월) 10:00	- 법안 및 결산 상정
	농림법안소위	8/27(화) 10:00	- 법안 심사
	해양법안소위	8/28(수) 10:00	- 법안 심사
복지위	전체회의	8/26(월) 10:00	- 법안 및 결산 의결
환노위	전체회의	8/26(월) 10:00	- 결산 상정,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김문수) 인사청문회
		8/28(수) 10:00	- 결산 의결
	예결산소위	8/27(화) 10:00	- 결산 심사
정보위	전체회의	8/26(월) 10:00	- 결산 상정
		8/28(수) 10:00	- 결산 의결
	예결산소위	8/27(화) 10:00	- 결산 심사
예결위	전체회의	8/28(수) 10:00	- 간사 선임의 건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8/26(월) 08:00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과연 필요한가	김 건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8/26(월) 10:00	모든 노동자 직장 건강보험·국민연금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전종덕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8/26(월) 13:50	범국가적인 AI 산업 육성 및 AI 생태계 조성	박찬대·성일종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8/26(월) 14:00	북한 그리고 통일 포럼 :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	권영세·김기웅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8/26(월) 14:00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박수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8/26(월) 14:00	석면관리제도 개선 토론회	김주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8/27(화) 10:00	재정 신속집행 제도 실효성 논란 문제점과 대안은?	박정현·이광희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8/27(화) 14:00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 : 신종 담배 규제 방안은?	박성훈·한지아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8/27(화) 18:30	2024 미국 대선 Pathfinder. 3강 : 미국대선과 한국경제	위성락·김태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8/28(수) 07:30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소병훈·용혜인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8/28(수) 08:00	[제1회 조찬강연 토론회] 원자력 강국의 길과 우리의 과제	유용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8/28(수) 09:30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	박충권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 의실
	8/28(수) 14:00	RE100과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	여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8/28(수) 14:00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송석준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8/28(수) 15:00	글로벌 바이오 산학연병정의 유기적 공조 생태계 방안	조승래·안철수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8/28(수) 15:00	기후위기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R&D 활성화 방안	한정애·정희용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8/28(수) 16:00	라인야후사태의 합의와 과제 : 경제안보 대 경제적 강압, 데이터 보호 대 데이터 보호주의	주호영 의원실, 한일의원연맹	본관 다목적 영상회의실
	8/29(목) 14:00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	최형두·김영배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8/29(목) 18:30	2024 미국 대선 Pathfinder. 4강 : 2024 미국대선, 어디로 가는가?	위성락·김태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8/30(금) 10:00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민병덕·강민국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8/30(금) 10:00	표류하는 성남시의료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수진·김태년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8/30(금) 13:00	재정·조세정책 개혁방안 : 통화·금융정책과 불평등 그리고 대안	최기상 의원실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8/30(금) 14:00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원도심 개발 여건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조승환 의원실 등	부산영화체험박 물관
	8/30(금) 14:00	순천만 흑두루미&생태관광 국회 세미나	권항엽·김문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8/30(금) 15:00	부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조경태 의원실 등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자료집 등	8/2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53호 발간 - 영국의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에코디자인 입법례	국회도서관	
	8/28(수)	「The 현안」 제25호 발간 -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8/28(수)	「금주의 서평」 제693호 발간 - 도서명 : 어쩌면, 사회주택 - 저자 : 최경호		
	8/29(목)	「현안, 외국에선?」 제89호 발간 -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등장한 세 인물		
	8/28(수) 13:30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 공동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처 대회의실
	8/26(월)	「NABO Focus」 제75호 발간 -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 여건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8/27(화)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 제5호 발간 - 재정경제 이슈와 관련된 주요 통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8/19(월)	「THE 현안」 제24호 발간 - 넷제로(Net-Zero), 탄소와의 전쟁	국회도서관	
	8/21(수)	「Data & Law」 2024-9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우주항공산업		
	8/23(금)	「NABO 경제동향」 제44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8/19(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5호 발간 - 국회 미래위원회, 정부 미래세대부 신설로 대전환기에 대응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8.19~08.25)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8/19(월)	금융	금융사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8/19(월)	건설/부동산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전체회의(총회) 개최를 저지한 사례
8/20(화)	에너지·자원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
8/20(화)	국제상사중재	영국 중재법 약식판정 도입 예정 - 중재합의 및 전략 수립시 고려 필요
8.21(목)	환경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23(금)	공정거래	2024.8월부터 바뀌는 기업결합 관련 제도 총정리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